병무청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누리집 게시 2026. 10. 26.(월)

병무청은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보도된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사회복무요원 '구멍'」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MBC, '26. 10. 25.)

□ 설명 내용

○ 병무청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복무 중 성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이 출소 후 재복무할 경우,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도된 내용 중 사회복무요원 3명이 '성범죄'로 처벌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후 학교로 출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성범죄'로 처벌된 사회복무요원 중 2명은 재복무와 동시에 학교 관할 교육청 행정지원 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복무

기관을 변경했으며, 1명은 개인 사유로 휴가 등을 쓴 뒤 학교에 복귀시키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을 변경했습니다.

○ 한편,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종료한 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32조의2제1항),

○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병역법 제32조의2제2항), 해당 요원에 대해서는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절차 외에도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복무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는 한편,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수	(042-481-3004)
		담당자	사무관	양명준	(042-481-30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